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각종 법률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매년 특허 출원이 1.3%씩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서울시의회에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지식재산권 및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와 함께 다변화된 입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